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609호 2021. 7. 19(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3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72호 도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5호선) 공사완료 공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84호 2021년도 제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공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85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86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8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90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 47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32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746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7.1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7-1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746 (연희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아시아드 임시신발점사소(드라이브스루)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2-66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74 (원창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침신생의 호통 따서 제명	
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60 (당하동)	20200420	'서로' 발전하는 도시에서 착안, 신도시의 남쪽을 잇는 세번째 도로	인천해둔초등학교
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01 (원당동)	20200420	'서로' 발전하는 도시에서 착안, 신도시의 남쪽을 잇는 세번째 도로	인천원명초등학교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9-14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69번길 20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고시일 : 2021-7-19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62-15 (왕길동)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62-17 (왕길동)	건축물대장 분리	20090922	사월이라 불리던 자연무막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62-15 (왕길동)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62-19 (왕길동)	건축물대장 분리	20090922	사월이라 불리던 자연무막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6번길 11-7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06번길 11-9 (오류동)	소유자 신청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공단식당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7-19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4로 10 (오류동)	건물말소	2012-10-25	우리구 해남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네번째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68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및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 시달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개정하여 주소정보 사용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
-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제2조, 제5조, 제14조)
- 다.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제3조)
- 라.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을 활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제4조)
- 마.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6조 ~ 제12조)
- 바. 주소정보시설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제13조)
- 사. 위탁에 관한 사항(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가정보육과 및 감사담당관
- 라. 기 타 : 기타사항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 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및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회의 및 화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 의견제출서

검토구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21-1272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호선), 사업명 : 당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0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호선)사업
  - 【명칭】 당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호선) L=179m, B=6m 중  
금회 개설 L=23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 서구 당하동	1134	도	1,159.1	43	인천 광역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244)				
계				1,159.1	910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인천 서구 당하동	1101-4	은행나무	D25, H5	1주		임*동	인천 서구 청마로 ***번길 **			
			살구나무	D25, H5	1주						
			배나무	D15, H3	1주						
			배나무	D10, H2	1주						
			감나무	D30, H7	1주						
			감나무	D20, H7	1주						
			장미	2.0×0.8, H1.5	2그루						
			장미	1.0×0.8, H2.0	2그루						
			진달래	1.0×1.0, H1.3	3그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서구청 본관4층 도시계획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79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5호선)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3(2021.01.22.)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하고 공사 완료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5호선, 사업명: 석남동 소1-15호선 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77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5호선)
- 명칭 : 석남동 소1-15호선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소로	1	15	10	국지 도로	168	광2-4 (석남동648)	중1-68 (석남동 223-179)	일반 도로	-	1988.12.2. (인고 1406호)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기간 : 2019. 05. 20. ~ 2021. 07. 3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84호

## 2021년도 제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공고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2021년도 제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를 하고자 공고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I. 2021년도 제2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 신청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10. 12. 31.이전 준공건축물)

#### ○ 지원대상 사업내용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등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 내)
- 경비실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11.(수)**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560-3002 ~ 3003)
- 신청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 참조)
- 사업계획서 1부(지정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또는 입주자 동의서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 근거자료
  - ※ 견적서 등 산출근거자료는 업체별 1부씩 총 3부 필히 첨부  
(동일한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 시)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전 액	임의관리 전 액	
7백만원 이하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 ①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④ 사업시행 ⇒ ⑤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⑥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⑦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 □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시 타 신청단지에서 보조금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신청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음**
-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임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 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II. 2021년도 제2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신청 대상 및 내용

- 신청대상 :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0.12.31. 이전 준공)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선정방법 :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11.(수)**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 560-3002 ~ 3003)
- 신청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붙임참조)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절차 및 일정

- ①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
- ④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⑤ 안전점검 실시 ⇒ ⑥ 점검완료 및 통보

### 신청 시 유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  
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  
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Ⅲ.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신청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 사업내용 (택일)

구 분	지원기준	비 고
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	- 1개소 최대 500천원 지원	- 단지 당 2개소까지 가능
모래교체 및 탄성바닥재 설치	- 1개소 최대 6,250천원 지원	- 모래교체만도 신청 가능 -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바닥재 설치에 대해서만 지원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11.(수)**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560-3002 ~ 3003)
- 신청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구비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서 1부(붙임 참조)
- 사업계획서 1부(자유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각 1부 또는 입주자 동의서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 근거자료  
 ※ 견적서 등 산출근거자료는 업체별 1부씩 총 2부 필히 첨부  
 (동일한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시)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 ①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지 결정 ⇒ ④ 사업시행 ⇒ ⑤ 지원금 지급 신청 ⇒  
 ⑥ 현장확인 ⇒ ⑦ 공사내역 확인 후 정산 및 지원금 교부

## □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최종 사업금액 감소의 경우 지원금 재결정(감액정산)되고, 사업금액 증가의 경우 증액없이 결정지원금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붙임 20】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타 신청단지에서 지원금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추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청 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신청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집행 등 위법사항 발견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지도·감독(구청)

- ①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 실시
- ②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85호

##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1.7.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1년 7월 19일

3.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 등록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류	규격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과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과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3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과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4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과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5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 폐기 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종 류	규 격	등록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담당관분임재무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담당관분임징수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3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담당관물품운용관인	회계관직인	2.0cm x 2.0cm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4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담당관분임물품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5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회계관직인	1.8cm x 1.8cm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분임징수관인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분임재무관인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물품운용관인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과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7월 19일	

## □ 폐기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획담당관 분임징수관인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획담당관 분임재무관인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획담당관 물품운용관인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획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기획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2021. 7.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202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8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20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삭제함으로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진입제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경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435, 팩스 032-560-273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 20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삭제함으로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진입 제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및 가정보육과 합의 완료
-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담배소매인지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u>민법</u>」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u>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u>으로 <u>담배소매인 지정</u> 사실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담</u> <u>배소매인지정</u> ----- ----- ----- ----- -----.</p>

## 관계법령 발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89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과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한 부분 개선
3. 주요내용
  -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여 법과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안 제2조제1항제1호)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변경함(안 제4조제2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계있는”을 “관계 있는”으로 변경(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감사담당관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제2청사 13층 감사실

- 전 화 : ☎ (032)560-6861, FAX (032)560-2705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과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한 부분 개선

## 2. 주요내용

- 가.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여 법과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  
(안 제2조제1항제1호)
-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변경함  
(안 제4조제2항)
-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계있는”을 “관계 있는”으로 변경  
(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계있는”을 각각 “관계 있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 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5명의 위원은 <u>법관</u>,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 ----- ----- ----- -----.</p> <p>1. ----- <u>판사·검사·변호사</u>-----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략)</p> <p>② 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u>제1항의 규정에</u>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제1항에도</u> ----- ----- ----- ----- -----.</p>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생 략)

④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관계 있는-----
- 2. -----  
----- 관계 있는-----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b>관·실·과별 의견</b>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90호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92(2019. 5. 13.)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조합 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9조(관계 서류의 공람)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I. 사업시행계획(변경)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외 7필지
  - 나. 구역면적 : 15.244.0m<sup>2</sup>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천희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89, 3층
4. 사업시행 내용 및 규모
  - 가. 내 용 :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정비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설치

#### 나. 건축계획

- 1) 대지면적 : 13,028.2m<sup>2</sup>
- 2) 건축면적 : 2,894.0782m<sup>2</sup>(건폐율 : 22.214%)
- 3) 연 면 적 : 84,786.9659m<sup>2</sup>(용적률 : 446.1364%)
- 4) 층 수 : 지하4층, 지상29층
- 5)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4개동 5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134호

#### 다. 정비기반시설 계획

- 1) 도로(1,847.7m<sup>2</sup>), 주차장(368.1m<sup>2</sup>) 조성 후 기부채납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 II.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III.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과(☎032-560-459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 4층)

### IV. 의견제출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과 또는 석남3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 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하였습니다.